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
|--------------------------|
| 공 보 |
| http://www.daedeok.go.kr |

제2020-46호
2020. 5. 26.(화)

| | |
|---|-----------|
| 선 | 기관(부서)의 장 |
| 람 | |

차 례

규 칙 (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93호)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894호) 5

공 고 (1)

-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공고 제2020-566호) 21

입 법 예 고 (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574호) · 24

| | | | | | | | | | |
|--------|--|--|--|--|--|--|--|--|--|
| 공 람 |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5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9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본문 중 “외부강의 등을 할때에는”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
을 할 때에는”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
고, 같은 항 단서 중 “외부강의·회의등의”를 “외부강의등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그”를 “그 공무원의”로 하며, 같은 조 제6
항 전단 중 “외부강의등을”을 “사례금을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 수 제한) ① (생 략)</p> <p>② 공무원은 <u>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 세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 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미리 서 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 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u>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 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 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u></p> <p>④ (생 략)</p> <p>⑤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무 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 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u>그 외부 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u></p> <p>⑥ 공무원이 월 3회 또는 월 6 시간을 초과하여 <u>외부강의등을</u></p> | <p>제2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 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사례금을 받는 외 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u> ----- ----- <u>그 외부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 내에 -----.</u> ----- -- <u>외부강의등의 -----</u> ----- -----.</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u>그 공무 원의 -----.</u></p> <p>⑥ ----- ----- <u>사례금을 받고</u></p> |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동강령
책임관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에
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
준초과 외부강의등에 관하여 검
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⑦ (생략)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을 -----

-----.

-----.

⑦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에 한하여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시기가 외부강의 등을 마친 후 사후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행위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무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변경하고, 신고의 시기가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변경함 (제22조제2항).
- 신고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제22조제5항).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5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89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의 제목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 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사료화·퇴비화 시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분리보관은 다음 각호”를 “분리 보관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재활용가능”을 “재활용 가능”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작설치”를 “제작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

량제봉투가 아닌 용기등”을 “종량제 봉투가 아닌 용기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동별수거일정”을 “동별 수거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형폐기물스티커”라 한다)을 종량제봉투판매소, 동 주민센터”를 ““대형폐기물 스티커”라 한다)을 종량제 봉투 판매소, 동행정복지센터”로, “대형 폐기물”을 “대형폐기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10,000원권,15,000원권”을 “10,000원권, 15,000원권”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종량제봉투의 색상 및 재질등)”을 “(종량제 봉투의 색상 및 재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량제봉투의 색상”을 “종량제 봉투의 색상”으로, “공공용봉투”를 “공공용 봉투”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종량제봉투는”을 “종량제 봉투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종량제봉투”를 “다만, 종량제 봉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종량제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인쇄원판”을 “인쇄 원판”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민간제조업체에서 종량제봉투”를 “민간 제조업체에서 종량제 봉투”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를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량제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공급받고자할”을 “공급받고자 할”로, 같은 항 및 제2항 중 “구청장또는공급대행자”를 각각 “구청장

또는 공급 대행자”로, 같은 항 중 “한후”를 “한 후”로, “대형폐기물스티커”를 “대형폐기물 스티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공공용봉투를”을 “공공용 봉투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골목길등의 특별대청소”를 “골목길 등의 특별 대청소”로 하며, 같은 항 후단 및 제5항 중 “공공용봉투”를 각각 “공공용 봉투”로, 같은 항 중 “수불사항”을 “수불 사항”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를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대행자”를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 대행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징수등”을 “징수 등”으로,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및”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감면대상자”를 “감면 대상자”로, “1세대당”을 “1세대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동장은 조례”를 “조례”로, “감면사유 2이상에 해당되었을”을 “복수의 감면사유에 해당될”로, “감면사유 1”을 “유리한 감면사유 하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 대상자에게 일반용 봉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대장에 지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7호서식의 명부를 작성하여 감면 대상자의 전·출입 사항등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⑤ 조례 제2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면대상자의 경우 봉사단체 관리

부서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지급요청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에 대한 배부는 지급요청한 부서에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일정·장소·용기 사용 미준수행위, 분리보관·배출위반행위, 종량제 봉투를 묶지않고”를 “일정·장소·용기사용 미준수 행위, 분리 보관·배출 위반행위, 종량제 봉투를 묶지 않고”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특별 대청소”를 “특별 대청소”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급에 관한 사항

별표 1,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기존 제작분의 소진 후 재제작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대형폐기물 스티커(제4조의2제2항 관련)

NO : (누계연번)

| | |
|---|---|
| <p style="text-align: center;">폐기물부착용</p> <p>판매업소 : ()</p> <p style="text-align: center;">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p> <p>금액 :</p> | <p style="text-align: center;">배출자보관용</p> <p>판매업소 : ()</p> <p style="text-align: center;">대형폐기물수수료납부필증</p> <p>금액 :</p> |
| <p>○ 배출자 :</p> <p>○ 배출일 : 년 월 일</p> <p>○ 배출장소 :</p> | <p>○ 배출자 :</p> <p>○ 배출일 : 년 월 일</p> <p>○ 배출장소 :</p> |
| 배출품목 | 배출품목 |
| ※ 배출품목에 ○표 하십시오 | ※ 배출품목에 ○표 하십시오 |
| <p>※ 대형폐기물 배출시에는 반드시 구청 기후환경과 (608-6831~7)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여 주십시오.</p> <p>오정동(608-5601), 대화동(608-5602), 회덕동(608-5603) 비래동(608-5604), 송촌동(608-5605), 종리동(608-5606) 법 1동(608-5607), 법 2동(608-5608), 신탄진동(608-5609) 석봉동(608-5610), 덕암동(608-5611), 목상동(608-5612)</p> | <p>※ 대형폐기물 배출시에는 반드시 구청 기후환경과 (608-6831~7) 또는 동행정복지센터로 신고하여 주십시오.</p> <p>오정동(608-5601), 대화동(608-5602), 회덕동(608-5603) 비래동(608-5604), 송촌동(608-5605), 종리동(608-5606) 법 1동(608-5607), 법 2동(608-5608), 신탄진동(608-5609) 석봉동(608-5610), 덕암동(608-5611), 목상동(608-5612)</p> |
|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인] (인영인쇄) |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인] (인영인쇄) |

<별지 제10호서식>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신청서

| 구 분 | 수 량(매) | 공급단가(원) | 금 액 | 비 고 |
|--------------------------------------|---------|---------|-----|-----|
| 일 반 용 봉 투 | 1 l | | | |
| | 2 l | | | |
| | 3 l | | | |
| | 5 l | | | |
| | 10 l | | | |
| | 20 l | | | |
| | 30 l | | | |
| | 50 l | | | |
| | 75 l | | | |
| | 100 l | | | |
| 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 | 2,000원 | | | |
| | 3,000원 | | | |
| | 4,000원 | | | |
| | 5,000원 | | | |
| | 6,000원 | | | |
| | 8,000원 | | | |
| | 10,000원 | | | |
| | 15,000원 | | | |
| 계 | | | | |

위와 같이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공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업자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대덕구청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조의2 (<u>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u>)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u>폐기물처리시설</u>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 략) 2. <u>사료화·퇴비화시설</u> 3.·4. (생 략) <p>제3조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방법)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u>분리보관</u>은 다음 <u>각호</u>의 방법에 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u>재활용가능폐기물</u>과 기타 생활폐기물로 분리·보관하여야 한다. 2. <u>재활용가능 폐기물</u>은 기본품목별로 분류·보관하여야 한다. <p>제4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의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하여 제10조제1항에 의하여 공고한 배출장소를 뜻하 | <p>제2조의2 (<u>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u>) ----- ----- -- <u>폐기물 처리시설</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사료화·퇴비화 시설</u> 3.·4. (현행과 같음) <p>제3조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방법) ----- ----- <u>분리 보관</u>은 다음 <u>각 호</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 <u>재활용 가능 폐기물</u>----- ----- -. 2. <u>재활용 가능</u> ----- -----. <p>제4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 ----- ----- ----- ----- |

고, 용기는 구청장이 공공의 필요에 의하여 제작설치한 생활폐기물 수거용기를 말한다.

② 연탄재는 종량제봉투가 아닌 용기등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조례 제 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공고한 동별수거일정에 맞추어 배출하여야 한다.

④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대형폐기물스티커"라 한다)을 종량제봉투판매소, 동 주민센터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서 구입한 후 대형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일시 및 장소 등을 동장에게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⑤·⑥ (생략)

제4조의2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가격별로 2,000원권, 3,000원권, 4,000원권, 5,000원권, 6,000원권, 7,000원권, 8,000원권

----- 제작 설치-----
-----.

② ----- 종량제 봉투가 아닌 용기 등-----.

③ 재활용 가능 폐기물-----

----- 동별 수거일정-----
-----.

④ -----

----- "대형폐기물 스티커"라 한다을
종량제 봉투 판매소, 동행정복지센터 -----
----- 대형폐기물-----

-----.

⑤·⑥ (현행과 같음)

제4조의2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종류 및 규격 등) ① -----

0원권, 10,000원권,15,000원권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6조 (종량제봉투의 색상 및 재질등) ① 종량제봉투의 색상은 일반용 봉투는 연두색으로, 공공용봉투는 옅은 청색으로 한다.

제7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① 종량제봉투는 매년 분기별로 제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종량제봉투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주민의 불편이 있을 때에는 긴급 제작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인쇄원판을 철저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제조업체에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제작하는 동안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의 제작 업무를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 10,000원권, 15,000원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 (종량제 봉투의 색상 및 재질 등) ① 종량제 봉투의 색상-----
공공용 봉투-----
----.

제7조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는 -----
----- . 다만, 종량제 봉투 -----

-----.

② -----
----- 종량제 봉투 ----- 인쇄원판-----
----- . ----- 민간 제조업체에서 종량제 봉투 -----
-----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

제8조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조
례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
커 판매자가 일반용 봉투 및 대
형폐기물 스티커를 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하여 구청장또는공
급대행자에게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의 공급을 신
청한다.

② 구청장또는공급대행자는 제
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
폐기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한후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
커 판매자에게 일반용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공급하여
야 한다.

③ 삭 제

④ 구청장은 조례 제18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관리요원
에게 가로청소작업에 필요한 적
정량의 공공용봉투를 공급한다.
또한 골목길등의 특별대청소를
실시할 경우에 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공급한다.

⑤ 구청장과 동장은 제4항의 규

물 스티커의 공급 및 판매) ①

종량제 봉투 -----

----- 공급받고자
할 -----
----- 구청장 또는
공급 대행자-----

-----.

② 구청장 또는 공급 대행자--

----- 한
후 ----- 대형폐기물
스티커 -----

-----.

④ -----

----- 공공용 봉투를 -----.
----- 골목길 등의 특별 대청소

----- 공공용 봉투-----.

⑤ -----

정에 의하여 공공용봉투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대장에 공공용 봉투의 수불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①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처리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대행자 또는 지정판매소 공급금액으로 부과 및 징수한다.

②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등에 관하여 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조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감면)

① 조례 제2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감면대상자(“배우자”를

공공용 봉투

수불 사항

제10조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① -----

----- 종량제 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 공급 대
행자 -----

② -----
----- 징수 등 -----

----- 「대전광역시 대덕
구 구세 기본 조례」, -----

제11조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감면)

① -----
----- 감면 대상자 -----

포함한다)는 1세대당 4인 가족을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다.

② 동장은 조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자가 감면사유 2이상에 해당되었을 때에는 그중 감면사유 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③ 동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자에게 일반용봉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대장에 지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7호서식의 명부를 작성하여 감면대상자의 전·출입 사항등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④ (생략)

<신설>

제13조 (권한의 위임) 조례 제56

----- 1세대 당 -----
-----.

② 조례 -----
----- 복수의
감면사유에 해당될 -----
----- 유리한 감면사유 하나-----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대상자에게 일반용 봉투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급대장에 지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별지 제7호서식의 명부를 작성하여 감면대상자의 전·출입 사항등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조례 제2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면대상자의 경우 봉사단체 관리부서에서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지급요청하는 경우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에 대한 배부는 지급요청한 부서에서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권한의 위임) -----

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략)
5.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 불법소각행위, 정해진 일정·장소·용기 사용 미준수행위, 분리보관·배출위반행위, 종량제봉투를 묵지않고 배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 6.·7. 삭제
8. 특별대청소의 날 지정 및 실시
<신설>

----- 각 호-----.

1. ~ 4. (현행과 같음)
5. -----
-----, ----- 일정·장소·용기 사용 미준수 행위, 분리보관·배출 위반행위, 종량제 봉투를 묵지 않고 -----

8. 특별 대청소-----
--
9.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지급에 관한 사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에 대한 종량제 봉투 무료제공 근거 마련 및 조문 현행화.

2. 주요내용

- 동 주민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제4조제4항).
- 종량제 봉투 감면대상자 추가(제11조제5항).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제2조부터 제13조까지).
- 별표 및 별지 내용 현행화(별표 1,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일원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1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열람공고 의뢰가 있어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본 공고와 관련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26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명 : 대전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1차
2.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대전충남지역본부)
※ 수용재결신청(20수용0540) 서류문의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 108,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보상관리부(☎042-470-0618)
3. 열람 및 의견서 제출기간
- 2020. 5. 26. ~ 2020. 6. 19.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4. 열람장소 : 대덕구청 별관4층 도시계획과(☎042-608-5372)
5. 재결신청서 및 관계서류 : 열람장소에 비치

6. 기타사항 : 본 수용재결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 열람기간 중
에 의견서를 대덕구청 도시계획과로 제출할 수 있음(방문, 우편, 팩
스 등)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별관4
층 도시계획과 / 우편번호 34443 / ☎042-608-5372, Fax. 042-608
-3841

의견서

| | | |
|--------|--------|--|
| 1. 제 | 목 | |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 | 주소 | |
| 3. 의견 | | |
| 4. 기타 |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

의견 제출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대전광역시토지수용위원회 귀하

| | |
|----|--|
| 비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57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제안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규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2020년 5월 26일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이유

제안자가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안 실시 공로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심사·채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제안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 인사상 특전 부여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0조제2항).

나. 타 기관으로부터 제안채택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 인사상 특전부여가 가능하도록 정함(안 제20조제3항).

다. 제안 실시 공로자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6조제2항).

라.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심사·채택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2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및 보내실 곳

- 1) 서 면 : 우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오정동)
대덕구청 기획홍보실
- 2) 전 화 : 042-608-6045
- 3) F A X : 042-608-3811
- 4) E-mail : suone123@korea.kr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획홍보실 담당자(전화 : 042-608-604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 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

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28조를 제29조로 하고,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구청장은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20조 (인사상 특전)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em;"><u><신 설></u></p> <p style="padding-left: 2em;"><u><신 설></u></p> | <p>제20조 (인사상 특전)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 가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 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u></p> <p>③ <u>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 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 1항 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 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 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다.</u></p> |
| <p>제26조 (보상) (생 략)</p> <p style="padding-left: 2em;"><u><신 설></u></p> | <p>제26조 (보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u>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 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 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u></p> |

| | |
|--|--|
| <p><u><신 설></u></p> <p><u>제28조 (생 략)</u></p> | <p><u>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20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u></p> <p><u>제28조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구청장은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 · 채택할 수 있도록 한다.</u></p> <p><u>제29조 (현행 제28조와 같음)</u></p> |
|--|--|

[관 계 법 령]

□ 「공무원 제안 규정」

제17조(인사상 특전) ①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제안과 관련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 규정」 제18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요청한 경우를 포함한다)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제1항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된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20조(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①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7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6조(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의 채택) 시장(*도지사·군수·구청장)은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채택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

제14조(인사상 우대 조치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적극행정의 성과, 선발된 공무원의 희망,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인사상 우대 조치 중 하나 이상을 부여해야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2.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급
3.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8조에 따른 성과연봉 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 부여
4.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5.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단축
6.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가점 부여
7.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근속승진기간 단축
8. 그 밖에 희망 부서로의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의 우대 조치

대덕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고 (제출일) |
|--------|-----|-------------|
| | | 2020. . .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